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8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김영배 · 이학영 · 김동아
한정애 · 손명수 · 부승찬
문금주 · 민병덕 · 홍기원
이개호 · 박수현 · 서삼석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생략)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u><신 설></u>	<u>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